



삼일회계법인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February 13, 2026



Table of contents

01 Tax news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재경부, 국내시장 복귀계좌·국민성장펀드 등 세제지원 조특법 개정 추진•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 개선·고도화 「기업부설 연구소 법」 시행• 2026년 6월부터 해외 신탁재산 신고제도 시행	
0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314호, 2026. 1. 27.)•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06호,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07호, 2026. 2. 5.)	
03 최신 예규·판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일의 판단•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계약 해지 후 미회수한 계약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01

Tax news

국세청,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이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구분	주요 내용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 추경예산(362.6조 원) 대비 19.1조 원 증가한 381.7조 원 • (관리방향)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및 신고내용 확인·체납 징수 활동 강화 등 소관 세수확보 총력
납세편의 향상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안내 강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지속 확대 및 공제·감면항목은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별도 안내 • (납세편의 제고) 국민비서를 통해 국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 등 서비스 개선 추진 • (신고오류 방지)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보완 및 확대
소송대응 강화로 과세권 수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보수 상향) 초고액·중소소송의 대리인 선임 시 공개경쟁방식 도입, 수입료 한도 대폭 상향 (기존: 수의계약·5천만 원 → 개선: 공개경쟁·10억 원) • (민사소송 확대) 악의적 재산은닉 등 수법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검토 기준금액 하향 (체납액 5천만 원 → 3천만 원)

2.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분	주요 내용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세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소상공인 지원) 부가세·종소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영세 사업자 간이 과세 적용 확대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 시행 • (세금애로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관세피해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 납기 연장(3개월 직권 연장·중간예납 2개월) 등 세정지원 실시 • (신산업 성장지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시·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 대상 각종 컨설팅 우선 처리 및 전용상담 제공

구분	주요 내용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하고 해당 시기에 조사 착수하도록 개선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도입) 세무조사 중 반복 적출되는 신고 오류 등 주요 검증 항목 사전 공개 및 조사 착수시 안내 (물가안정 소상공인) 물가안정 기어 소상공인(행안부 등에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약 1만 개) 조사유예 신설 (수출 중소기업) 수출 우수 중소기업(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중소기업) 조사유예 일몰기한 1년 연장 (2025년 → 2026년) (스타트업 기업) 스타트업 기업 조사유예 적용대상 확대 (현행: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 확대: 10년 미경과 중소 벤처기업)
납세자 불편 적극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의견 상시수집) 자영업자·소상공인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는 세무서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K-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외교 전개) 핵심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교류 강화로 해외 진출 시 세무 불확실성 해소 (K-문화 선도기업 지원) 해외 진출 K-문화 선도기업에 대한 상호합의 우선 추진 (해외진출 세미나 개최) 해외진출기업 대상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로 이전가격 세무이슈 공유 및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지원 제공

3. 조세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구분	주요 내용
국제 체납관리단 운영 전 체납자 맞춤형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방향) 국제 체납관리단 정식 출범·실태확인 후 유형별 맞춤형 징수 (엄정한 후속조치) 실태확인 결과 체납자 유형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생계곤란형 → 납부의무소멸·복지연계, 고의적 납부기피자 → 정밀분석·추적조사)
영세 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의무 소멸 도입)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1의 체납액 납부의무 조기 소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무재산·폐업자 *2 국제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후 6개월 내 결정 (징수특례 확대) 폐업 후 사업 재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현행) 사업자등록자·취업자 →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가 - 기준금액: 종소세·부가세 합계 체납액 기준 (현행) 5천만 원 → (확대) 8천만 원
악의적 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적조사 강화) 세무서 추적조사 전담반의 전 관서 확대 및 지방청 특별기동반을 통한 신속한 현장수색으로 징수역량 제고 (적극적 공매 집행) 압류재산의 일괄 점검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매 속행 및 허위 근저당 조사 등으로 조세채권 엄정 관리
202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규모 탄력운영)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14,174건 → (2023년)13,973건 → (2024년)13,980건 → (2025년)14,000건 내외 (공정·상식 기반의 조사운영)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구분	주요 내용
편법과 불공정에 의한 악의적 탈세를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성장 훼손행위 엄단) 지배주주의 터널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소액주주 권익 침해 행위 점검 · (민생침해 탈세 근절) 서민 대상 불법·불공정행위 및 생활밀접 업종의 물가 인상 행위 검증 · (온라인 신종탈세 대응) 유튜버 등 탈루행위·온라인 신종 업종 탈세 대응 강화 · (부동산탈세 차단)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전수 검증, 매매거래 위장·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 집중 조사
지능적 역외탈세·재산은닉에 대한 전방위 포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적 역외탈세 대응) 세금 회피·국부 유출 다국적기업 엄단 · (은닉재산 논스톱 대응)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국가 간 징수공조 등 논스톱 대응체계 구축 · (역외대응 인프라 강화) 징수공조 이행을 위한 MOU 체결 확대,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제재수단 추가 도입 추진 (조세회피 목적 지연 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세법개정 건의)
공익법인 관리 강화로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책임성 확보) 결산서류 재공시 수정 추적시스템 도입 · (검증 강화) 공익자금 부당유출 혐의,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의무위반 공익법인 집중점검
성실신고 분위기 저해 탈세조력자 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성실 대리인·플랫폼)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 처벌 강화 및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신설 추진 · (미등록 PG) 미등록 PG의 가맹점 매출자료 제출의무 도입 및 금감원 명단 제공 추진

4.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구분	주요 내용
AI 국세행정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방향)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 수립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납세서비스 혁신, ② 공정과세 구현, ③ 세정 효율화 등 세정 프로세스 전면 혁신 -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국세청 내부 GPU 서버 구축, 생성형 AI 모델 도입 · (선도과제 개발)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선개발·AI 기반 납세서비스 완성도 제고
정보보안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 수립) AI 시스템 구축 시 보안위협 제거, 민감정보 접근범위 설정, AI 편향 방지 위한 규정 마련 · (내부 자료유출 방지) 과세정보 보안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직무에 따른 정보조회 권한 관리 철저
가상자산 탈세 대응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트롤타워 신설) 부서별 분산 업무를 조정하는 총괄부서(가칭 디지털자산 총괄과) 신설 추진 · (관리시스템 마련) 가상자산 정보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거래추적 고도화 프로그램 도입·개발 · (역외정보 수집)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 제도(CARF) 준비 예산 및 인력 확보, 교환시스템 개발 등 추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단 출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 (체납관리단 운영)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점검 추진 · (징수 일원화) 근거 법률인 (가칭)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 적극 지원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금년 6월 최초 신고 대비 전산시스템 조기 구축 등 ·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소득 과세시행(2027년 1월 1일) 대비 전산시스템 준비 등

재경부, 국내시장 복귀계좌·국민성장펀드 등 세제지원 조특법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 양도소득세 특례 및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현행	개정안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 91의 26 신설)	□ <신 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 방법)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 (매도금액 5천만 원 한도) - (투자)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 · 단, RIA 내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 가능 ○ (혜택)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26년 3월 31일까지 매도: 100% 공제 ② 2026년 6월 30일까지 매도: 80% 공제 ③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 50% 공제 - 단, 2026년 중 해외주식 매입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 비율 조정 $[\text{조정 비율}] 1 - \frac{\text{RIA 외 해외주식 순매수금액}^*}{\text{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별 매수·매도금액에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순매수금액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RIA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분부터 적용	

구분	현행	개정안
<p>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황 (조특법 23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대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 ○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을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익금불산입률)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황 ○ (좌 동) ○ (좌 동) ○ (익금불산입률)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금 차입이자는 차감하여 익금불산입 ○ (적용기한)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p>〈개정이유〉 해외자산 환류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p>		



구분	현행	개정안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 29, §129의 2 등)	□ 〈신 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첨단전략산업 및 기업에 대한 ② 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 ③ 공모 집합투자기구^{*1}에 투자한 거주자^{*2} *1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2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 (요건) 전용 계좌를 통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3년 이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는 새롭게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시 적용 ○ (세제지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 차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4a460;"> <th>투자금액</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3천만 원 이하</td> <td>투자금액의 40%</td> </tr> <tr> <td>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td> <td>1,200만 원 + (3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td> </tr> <tr> <td>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td> <td>1,600만 원 +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td> </tr> <tr> <td>7천만 원 초과</td> <td>1,800만 원</td> </tr> </tbody> </table> *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 적용 - (배당소득)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투자일로부터 5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 투자 후 3년 경과 전 양도 또는 환매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한도) 투자금액 2억 원 ○ (적용기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	공제율	3천만 원 이하	투자금액의 4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1,200만 원 + (3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1,600만 원 +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	7천만 원 초과	1,800만 원
투자금액	공제율											
3천만 원 이하	투자금액의 4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1,200만 원 + (3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1,600만 원 +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											
7천만 원 초과	1,800만 원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 개선·고도화 「기업부설 연구소 법」 시행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개별법으로 분리·정비한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부설 연구소 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기업은 R&D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조세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바, 기업부설 연구소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업부설 연구소 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 연구 공간·인력·조직 운영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공간) 독립된 공간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고정 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분리·이동이 가능한 이동 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 공간으로 인정 • (부소재지) 기존에는 1개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를 요건 충족 시 2개 이상으로 복수 설치·운영 허용 • (연구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요건에 따라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
② 보완 기간 연장 및 검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완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인정 기준 미달로 보완 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인정 취소 - (개정)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 2개월 범위에서 보완 기간 연장 가능 • (검입 허용)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하여 타 업무 검입 허용
③ 현장 조사를 통한 인정취소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자진 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인정취소 절차 엄정성 확보 • 인정 기준 유지 여부 및 변경 신고 사항 확인 등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현장 조사 근거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인정취소 사유로 규정
④ 사칭 등 부정행위 금지·과태료 기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 및 사칭 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3년간 계도기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의 정도·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정상참작 사유에 따른 감경 기준 명시 <p>*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취득·허위 제출서류 작성 및 이에 가담 시 500만 원 이하,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경우 200만 원 이하</p>

2026년 6월부터 해외 신탁재산 신고제도 시행

지난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해외 신탁재산 신고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이 해외 신탁재산 신고제도를 안내하였으며, 해외 신탁재산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제출 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 제2조의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한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거주자·내국법인(이하 '위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 매 사업연도·과세기간에 해외신탁명세 제출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해외신탁명세 제출)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해외신탁 (국조령 §98 ⑤) -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 각각의 위탁자가 명세를 제출해야 하나, 위탁자 중 일부가 명세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 면제
제출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신탁명세서 (국조칙 별지 제51호의 2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탁자 인적사항 ② 해외신탁 보유현황 ③ 해외신탁별 명세(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관련자 정보 등) 기재 •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국조칙 별지 제51호의 2 서식 부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신탁 관련자(공동위탁자·공동수익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 유형 및 정보·지분비율 작성 •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국조칙 별지 제51호의 2 서식 부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외신탁재산 현황 ② 해외신탁별 해외신탁재산 명세(재산 상세내역·단가·평가가액 등) 기재 •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국조칙 별지 제51호의 2 서식 부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 해외신탁재산에 해외금융계좌(국조법 제53조에 따른 신고대상)가 포함된 경우 작성 <p>※ 해외신탁명세 제출 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국조법 §54 6호)</p>
제출·보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은 제출의무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명세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주요 내용**

재산가액 산정 • 재산별로 아래와 같은 시가 산정방식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함

[재산별 시가 산정 방식]

재산 구분	시가 산정 방식
현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
상장주식, 상장채권,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
해외집합투자증권	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납입금액
기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시가기준일: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경우 ①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② 신탁 종료일 그 외의 경우에는 ③ 신탁 설정(재산 이전 포함)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기한 및 적용시기 • **(제출기한)**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 **(적용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026년 최초 제출의무 발생*

* 신고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경우 올해부터 매년 해외신탁명세 제출,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한 경우 포함)한 연도에 대해 해외신탁명세 제출

취득자금 출처 소명 • 과세당국은 거주자·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내 해외신탁을 설정(재산 이전 포함)하고 기한 내 해외신탁명세를 미제출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 취득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명요구를 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국조칙 별지 제52호 서식) 제출
 - 소명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 출처가 소명된 경우 전액 소명으로 봄
 - 소명요구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 신청 시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 **(자료 미제출)** 제출의무자가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미제출·거짓제출* 하는 경우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 (1억 원 한도)
 -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 과세당국의 명세 제출·보완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포함
 • **(자금출처 미소명)**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미소명·거짓 소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0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314호, 2026. 1. 27.)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본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청년미래저축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1326호, 2026. 2. 5.)

개정 이유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21327호, 2026. 2. 5.)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개정 이유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26호, 2026. 2. 5.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의 방법 등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종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에 대하여 사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채납자가 채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21327호, 2026. 2. 5.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추어 압류금지 재산인 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06호, 2026. 2. 5.)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세 감면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자료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과세 불복절차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세 불복절차 중 의견진술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견진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07호, 2026. 2. 5.)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세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및 체납액 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03

최신 예규·판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일의 판단

(대법 2025두34823, 2026. 1. 5.)

쟁점사항

상증법은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는 거래 등을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증여일의 판단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상증법 §45의 5 ①, ③),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증여일을 판단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번 판결의 쟁점은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일이 되는 증여일이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대금청산일'인지 여부임.

판결요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기본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을 말하므로(상증법 §3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이익이 사실상 이전 또는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날인 '대금청산일'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재산의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도 증여일인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해당 재산의 '대금청산일'로 명시하고 있는 점(상증법 §35 ①, 상증령 §26 ⑤), 법인세법에서도 부동산 양도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법 §40 ①, 법령 §68 ① 3호) 등을 고려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은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함.

시사점

이번 판결은 특정법인이 재산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재산의 매매대금이 확정된 '매매계약일'이 아닌 증여의제 이익이 사실상 이전된 '대금청산일'임을 시사하므로, 특정법인에 대한 부동산 등 재산의 양수도 거래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증법과 달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산의 매매대금이 확정된 거래 당시인 '매매계약일'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판정 기준일이 된다는 점을 비교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음(법인세법 집행기준 52-88-5 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773, 2025. 11. 19.)

쟁점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조특법 §29의 8 ①), 이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2 ① 9호)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구 조특령 §26의 8 ②, 2025. 12. 31. 개정 전 및 조특령 §23 ⑩ 2호, '쟁점규정'),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남녀고용평등법 §19의 2 ①)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2 ① 9호),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19의 2 ③),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원칙적으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으로 판단됨.

시사점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쟁점규정 등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0.5명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조특령 §26의 8 ②·⑦, 2025. 12. 31. 개정 전 및 조특령 §23 ⑩ 2호·⑪),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있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월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지 또는 0.5명의 상시근로자 수로 포함할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계약 해지 후 미회수한 계약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99, 2026. 1. 5.)

쟁점사항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 × 10/110)을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 바(부가법 §45 ①), 이번 유권해석은 용역을 공급받기로 한 사업자가 용역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계약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임.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사업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되어 기지급한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한 사업자가 계약 해지로 미회수한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아니라 매입과 관련된 것이고,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계약 해지로 인한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가 미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으로 판단됨(조심2013부1434, 2013. 7. 4. 참조).

시사점

따라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기로 한 사업자가 계약금 등의 대가를 지급한 후 공급자의 폐업·파산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급자로부터 그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아니라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결정례·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조한철 Partner

han-chul.cho@pwc.com
02-3781-2577

정재훈 Partner

jae-hoon_3.jung@pwc.com
02-709-0296

김태훈 Partner

taehoon.kim@pwc.com
02-3781-2348

조영현 Director

young-hyun.jo@pwc.com
02-3781-9238

이민재 Director

min-jae_1.lee@pwc.com
02-709-8320

신예지 Senior-Manager

yeji.shin@pwc.com
02-709-0659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be](#).